●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2-69호

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9월 29일

방송통신사무소장

1. 근거법령

-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, 제76조(과태료)
- 0 질서위반해위규제법 제17조(과태료의 부과)
- 0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, 제15조(송달의 효력발생)
- 2. 행정처분 대상 : 송*진
- 3. 게재(게시)기간 : 공고일로부터 15일간
- 4. 이의제기기한 : 거재(게시)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
- 5.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체납,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.
- 0 건명 : 영리목적이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
- o 수입근거 :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(괕캐료)
- o 산출근거 :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9
- ※ 체납 시 과태료에 3% 가산금과,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,2%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,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.
 - (2012) 1 (2014) 1 (2014) 1 (2014) 1 (2014) 1 (2014) 2 (20

행정처분 대상자

구분	대상자	주민등록번호	고지주소	법 령 위반사항	과태료 금액(원)	스팸URL 전화번호	광고 내용
1	송*진	601006- *****	청주시 서원구	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	30,000,000	1522-***	대리운전
2	태*미	790210- *****	세종시 장군면	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	7,500,000	010-***-3736	부동산